

##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스포츠과학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검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이하 “체력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재원)체력센터를 설치하는 재원은 국비, 도비 그리고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위치)체력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71번지 오성빌딩 내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체력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민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2. 예방의학적 차원의 의학검진과 건강증진 상담소 운영
3. 도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제5조(체력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력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관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6조(위탁운영의 취소)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탁운영의 변경)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력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또는 단체에게 변경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임의변경 금지)수탁관리자는 설치된 체력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①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체력센터 운영 및 생활체육 관련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인력)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 가입)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조정)수탁관리자는 체력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 및 회계관리)①수탁관리자가 하는 체력센터의 회계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 등 활용)①수탁관리자는 매년 체력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를 시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체력센터 운영 및 시설확충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수탁관리자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체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체력센터 운영이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되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6조(감독)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체력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